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분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065
----------	------

제안년월일 : 2020년 11월 30일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주 문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각종 재난이 빈번함에 따라 본부장 부재 시 지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2]의 제1호 비고란에 “서울특별시는 1명의 소방부 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소방감으로 임명한다.”를 신설할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소방업무는 과거 화재진압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이 확대되면서 소방의 역할과 본부장의 책임도 확대되고 있고 있으나 소방관련 모든 업무가 본부장 1인에게 집중되어 효율적인 정책 판단을 어렵게 하고 본부장 부재 시 지휘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특히, 국가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소방본부장의 퇴직 또는 인사 이동 시 후임 본부장 발령이 지연될 경우 본부장의 공백 기간은 장기

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와 재난발생 빈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에 한해 소방부분부장 직제를 신설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지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조직체계를 보완코자 하는 것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기타사항 : 없음

### **4. 이송처**

가. 국회 : 행정안전위원회

나. 정부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다.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 **5. 첨부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분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부분부장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

서울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이 얽혀 있는 복합도시임.

다른 시도와 비교해 화재발생 2.5배, 구조출동 3.2배, 구급출동 3.2배로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재난의 대형화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최근 들어 소방업무는 과거 화재진압 중심에서 벗어나 구조·구급, 생활안전사고, 감염병, 테러 등 다양한 사고 및 재난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면서 소방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소방재난본부의 정책기능 및 역할, 재난 현장 지휘·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계층화된 조직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본부장을 보좌하는 부분부장 직제가 없어 평상시 모든 정책 판단과 의사 결정, 재난현장 지휘·통솔, 대외협력 등의 모든 업무가 본부장 1인에게 집중되어 효율적인 정책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본부장 부재시 지휘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특히, 국가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소방본부장의 퇴직 또는 인사이동 시 후임 본부장 발령이 지연되어 본부장의 궐위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경우 직무 대행을 보좌기구가 아니라 부서의 단위사무를 관장하는 과장급이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부분부장 직제 신설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할 것임.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청와대 소방대, 자치구별 소방서 등 28개 직속기관과 서울시 정원 18,709명의 약 38%에 달하는 7,200여명을 통솔하고 있어 대규모 조직체계에 해당함에도 소방본부장 보좌기구에 해당하는 부분부장 직제가 부재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며, 경찰 등 유사 조직 또는 다른 본청 실·국·본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 및 균형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사료됨.

현 행

1.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

구분	기획 담당 실장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소방 담당 본부장
서울특별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4명)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정감 (관리관, 일반직 1급)

2. 본청의 담당관·과장

구분	기획 담당 담당관	담당관	과장	소방 담당 과장
서울특별시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5명, 이 중 1명은 재난안전업무 수행)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부이사관, 일반직 3급)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4월 1일, 47년 만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되고 소방본부가 시장 직속부서로 격상된 만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대명제로 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장이 평상시 중요 정책결정 및 대외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대형 재난발생시 현장대응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성 있는 직무 대행체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2]제1호 비  
고에 ‘6. 서울특별시는 1명의 소방부분부장을 둘 수 있으며 소방감으로 임  
명한다.’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붙임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조문대비표

2020. 11. 3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붙임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기준 등					[별표 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기준 등				
1.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제10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기획 담당 실장	재난안전 담당 실·국· 본부장	실·국·본부장	소방 담당 본부장	구분	기획 담당 실장	재난안전 담당 실·국· 본부장	실·국·본부장	소방 담당 본부장
서울특별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급 또는 2급 또는 3급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명)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 정감	서울특별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급 또는 2급 또는 3급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명)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 정감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비고 1.~ 5. (생략) <u>&lt;신설&gt;</u>					비고 1.~ 5. (생략) <b>6. 서울특별시는 1명의 소방부분부장을 두며 소방감으로 임명한다.</b>				

※ 상기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표와 [별표 2] 시·도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정원표 서울특별시에 소방감 1명을 추가하는 개정 병행 필요함.